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(제 회)	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방송통신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5조의2 및 제45조의6('23.1.3 개정) 시행을 위한
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개정령(안, '23.7.4. 시행)을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·비상임위원 규정(안 제40조의5제1항)
- 나. 분쟁조정위원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근거, 소위원회 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는 근거 규정(안 제40조제5항)
- 다.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(안 제40조의8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기획재정부와 협의 예정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(안)
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5제1항 중 “비상임”을 “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 중”을 “상임위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회의를”을 “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(이하 “전체회의”라 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⑥ 전체회의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등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1까지를 각각 제40조의9부터 제40조의14까지로 하고,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6(소위원회 등)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소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상임위원으로 한다.

② 소위원회에는 분쟁조정 사건을 담당할 주심위원을 두어 해당사건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주심위원이 조정한 분

쟁조정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.

③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45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신청의 인용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
2.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3.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
제40조의7(수당과 여비 등)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비상임 주심위원에게는 조정사건별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또는 상임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40조의8(사무국) ①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0조의14(중전의 제40조의11) 중 “제40조의10”을 “제40조의1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의5(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은 <u>비상임</u> 으로 한다.	제40조의5(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상임위원과 비상임 위원</u> -----.
② <u>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.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	② (<u>현행과 같음</u>)
③ <u>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,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	③ (<u>현행과 같음</u>)
④ <u>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	④ ----- ----- ----- -- <u>상임위원 중</u> ----- ----- -----.
⑤ <u>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</u>	⑤ ----- -----

거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⑥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⑧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<신 설>

----- 위원 전원으로
구성되는 회의(이하 “전체회의”라 한다)를 -----.

⑥ 전체회의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등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제40조의6(소위원회 등)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5개

<조문이동>

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소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상임위원으로 한다.

② 소위원회에는 분쟁조정 사건을 담당할 주심위원을 두어 해당사건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가 의결하거나 주심위원이 조정한 분쟁조정 결과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.

③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법 제45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신청의 인용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

2. 법 제45조의5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
3.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
제40조의7(수당과 여비 등)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

※ 현행 제40조의5제8항에 비상임 주심위원과 상임위원 관련 내용을 추가

<신 설>

제40조의6 ~ 제40조의10 (생략)

제40조의11(운영세칙) 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

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비상임 주심위원에게는 조정사건별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또는 상임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40조의8(사무국) ①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 지원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0조의9 ~ 제40조의13 (현행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10까지와 같음)

제40조의14(운영세칙) -----
 --- 제40조의13-----

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 원장이 정한다.	----- ----- -----.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(통신분쟁조정팀)	
연 락 처	(02) 2110 - 1661